

[자료 1] 경과 보고

국가인권위 특집
특집 2008.1

- 1월 16일(수)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으로 격하
- 1월 16일(수) : 국가인권위, "개편안 규감" 의견 발표
- 1월 17일(목) : 국가인권위,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대통령직속기구 전환'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 1월 18일(금) :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등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역행하고 대통령 권한을 너무 키울 수 있다."(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1월 18일(금) :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인수위에 서한 발송)
- 1월 19일(토) : 인수위,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우리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아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된다."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 박재완)
- 1월 20일(일) : 인수위 브리핑 "(독립성 문제는) 조직의 법적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느냐,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 점에 있어 두 기관 다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가질 수 있다."(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
- 1월 20일(일) : 대통합신당 "최대한 서둘러도 28일 통과는 불가능하며, 졸속 통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우상호 대변인 명의)
- 1월 21일(월) : 한나라당 논평,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층이 코드에 맞추느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히 해 온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박태우 부대변인 명의)
- 1월 21일(월)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관련 45개 법안 국회 제출(한나라당 발의)...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포함
- 1월 21일(월) : 국제앰네스티 성명,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

[자료 1] 경과 보고

- 1월 16일(수)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국가인권위를 대통령소속으로 격하
- 1월 16일(수) : 국가인권위, “개편안 유감” 의견 발표
- 1월 17일(목) : 국가인권위,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대통령직속기구 전환’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 1월 18일(금) :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등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시대정신에도 역행하고 대통령 권한을 너무 키울 수 있다.”(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 1월 18일(금) :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홀륭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인수위에 서한 발송)
- 1월 19일(토) : 인수위,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우리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아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된다.”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 박재완)
- 1월 20일(일) : 인수위 브리핑 ”(독립성 문제는) 조직의 법적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느냐,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에서 검토돼야 한다”, “그 점에 있어 두 기관 다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가질 수 있다.”(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
- 1월 20일(일) : 대통합신당 “최대한 서둘러도 28일 통과는 불가능하며, 졸속 통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우상호 대변인 명의)
- 1월 21일(월) : 한나라당 논평,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충이 코드에 맞추느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충실히 해 온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박태우 부대변인 명의)
- 1월 21일(월) :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관련 45개 법안 국회 제출(한나라당 발의)…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포함
- 1월 21일(월) : 국제앰네스티 성명,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

[자료 2] 기자회견문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 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차별과 냉대를 받아도, 사는 게 힘들어 존엄성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던져도, 이젠 호소할 곳마저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16일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되더라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눈치를 보기보단 ‘인권’의 편에 섰다. 이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위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된다면 의제설정은 물론 인사와 예산, 운영 등 모든 영역에 대통령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통령의 방침과 의중을 담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례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해 온 대통령 밑의 직속기구가 더 이상 사형제 폐지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보다는 사용자의 자율성에 더욱 무게를 두는 대통령 밑에서 비정규직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국가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제대로 감시, 예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중 80%가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위가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변모하면서 행정부의 일원이 된다면 ‘일침’보다는 협력이란 미명하에 서로의 편의를 봄주고 슬쩍 눈감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인권위의 기능을 약화,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으며, 이는 앞으로 진행될 우리 사회의 인권후퇴를 알리는 첫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우는 친기업적 경제성장, 개발 논리는 힘없는 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할 때만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달픔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의료, 교육, 주거, 복지 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 과정에서의 노점상이나 영세 상인들을 울부짖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기억을 상기해본다면, 대운하 건설에 따른 재앙을 쉽게 예감할 수 있다. 마사지걸’ 발언, 장애아 낙태 발언 등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 역시 한 때의 말 실수가 아니다. 이는 당선자의 일그러지고 불온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리고 이런 소신을 거침없

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순종적 인권위가 필요한 것이며, 이를 시발로 아무런 비판과 견제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공안정국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눈물과 투쟁으로 한걸음씩을 뗀 인권의 역사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하다. 하지만 우리는 참담함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7년 전,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노상단식을 하며 독립된 인권위를 설립의 씨앗을 뿌렸듯이, 다시금 독립된 인권위를 지켜내는 투쟁을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벌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힘없고 추운 사람들이 온기를 얻는 인권의 세상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할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2. 인수위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을 철회하라!

2008. 1. 23

인권사회시민단체

[자료 3] 의견서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촉구한다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을 가져온다고 얘기할 뿐, 어디서도 독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회의)는 인수위의 이러한 인식이 결국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인권이란 권리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인권회의는 아래와 같이 인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① 국가인권위 독립성은 설립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합의사항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기존의 행정·입법·사법부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독립적 지위가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는 인권침해 사전예방기구이자 국가권력 감시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운동에서 독립성은 핵심적인 이슈였고, 장장 3년에 걸친 국가인권위 설립운동 끝에, 어느 헌법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위상을 규정한 현행 국가인권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어떤 정당이나 정권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에 관한 국가책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입니다.

한국정부 수립과정에서나 그 이후 광폭한 국가폭력을 경험해 온 국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존중과 신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국가인권위 설립운동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한 것 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인수위의 인식은 역사 를 거스르는 작태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 한 국가인권위의 위치를 오로지 효율성과 기계적인 형식논리를 끌어다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하시키는 것은 국민의 합의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②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은 ‘국제인권기준’입니다.

국가인권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합니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UN GA Resolution 48/134)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적인 지위는 정부의 특정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을 들고 있습니다.

③ 인권옹호에 대한 국가책무는 효율과 경쟁의 가치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향해야 합니다.

인수위의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지위에 관해 ‘헌법의 권리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매우 기계적인 헌법 해석입니다. 인수위는 ‘삼권분립’을 언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 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효율과 경쟁의 논리를 앞세워 인권옹호의 국가책무를 저버린다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 진정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정책에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2. 인수위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의 문제점

①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후퇴 됩니다.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면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 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감시자인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에 속한 어느 누구가 행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갈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1년 설립 당시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② 국제인권규범을 훼손하며 국내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문관 루이스 아버 씨는 1월 18일 인수위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것에 관해 재고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루이스 아버 씨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의 중요한 회원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며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앰네스티 모두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중진의 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인권회의는 인수위가 헌법상의 권한배분 등을 명분삼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는 의도를 경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수위의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이 논평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전담기구로 만들려는 속내를 내비친 점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

원회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결국은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국가인권기구는 민중들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뿐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침해 현실에 눈감는 국가인권기구, 인권박탈의 현실을 인권의 언어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국가인권기구, 그리하여 인권옹호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려는 차기 정부의 인권정책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인권회의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을 반인권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인수위가 이런 부담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짐 지우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 4]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와 논평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려하며 -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본래 취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UN 파리원칙 등 국제적 준칙에도 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개편 방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8년부터 무려 3년여 동안의 산고 끝에 2001년 5월 탄생하였다. 법 제정 과정에서 그 위상이나 형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그 동안 식민지배와 군사정권의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찬탈과 찬탈한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탄압당하고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는 인권 탄압의 선봉에 섰고, 국민을 인권 탄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법부 역시 인권보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 위에서, 우리 사회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는 인권기구를 가지는 인권존중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 위에 다른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이는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UN의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많은 인권 선진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인수위원회는 '삼권분립'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 -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년여의 시간 동안 부족함은 있었지만 조금씩 독립성과 실효성, 전문성을 가진 인권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참이었다. 출범한지 6년 밖에 안 되었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돌연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과거 법무부 인권국이나 그 밖의 정부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국가권력이나 정부정책에서 말미암는 인권 침해 구제나 감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리 를 오로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의 하나로 격하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요청에도 반하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출속적인 인권위원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기관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기 위해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8. 1. 17.

인권단체 연석회의

<논평>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속셈 드러냈다

- 한나라당 1.21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논평에 부쳐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하려는 속셈이 오늘 한나라당 박태우 부대변인의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란 논평으로 드러났다.

이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좌파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런 오도된 인식 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할 전담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속셈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동안 인수위 관계자들과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 등은 헌법에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와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여왔는데, 이번의 한나라당의 논평으로 이런 말들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한국적 특수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반대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인권례침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제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 실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의 본질적 목적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오로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정치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욕심이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당하는 인권침해는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눈밭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결행하면서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소연할 데 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바래온 우리는 정치적 도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려는 한나라당과 인수위의 기도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22일의 비상회의를 통해서 반인권정책을 결단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인권운동진영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

을 증진을 위해 인권적 원칙에 충실한 기구로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 1. 21.

인권단체 연석회의

[자료 5] 투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 서한

인수위원장님께,

저는 귀하께서 이끄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계획을 재고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국가인권기구로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의 중요한 회원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independence)에 대한 공인된 인식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인권기구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파리원칙(유엔결의 UN GA Resolution 48/134)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ICC의 승인을 받는 것과 국제인권 체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귀하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적, 지역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 홀륭히 하고 있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스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자료 6]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AI Index : ASA 25/001/2008 (Public)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는 국가 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본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인권을 보호할 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다. 또한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권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각 개인들의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권고를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기준, 특히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정부의 어떠한 부서로부터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겨레신문 2008. 1. 19자에 실린 곽노현 회원의 글입니다.

[기고] 대통령소속 인권위는 죽은 인권위 / 곽노현

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 ‘대통령소속 인권위’의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방침과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 사안에서 대통령의 의중과 정책을 거스르는 결정이 나올 경우 청와대는 집행부의 무능력과 비협조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은 혹시라도 자살꼴을 먹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인권위원 단속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소속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인사들과 자연스레 어울릴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면 팽팽한 긴장 속의 건강한 협력보다는 좋은 게 좋다는식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행정부 동료들의 장래에 누가 되지 않도록 될수록 비판 수위를 낮추게 될 것이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는 이치다. 상식적으로도 대통령 소속 인권위보다는 무소속 인권위가 대통령에게 좀 더 자유롭지 않겠나. 대통령과 각료들에게 인권침해 법령과 관행의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일종의 악역을 대통령 소속 인권위가 잘 할지, 아니면 무소속 인권위가 잘 할지는 너무나 답이 뻔한 것 아닌가. 현재 청와대는 인권위에 대해 어떤 공식보고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행정부 인사들과 마구 섞어 줄을 세우거나 평가할 수도 없다. 행정부 바깥의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문제, 비정규직법안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 결정적인 사안에서 정권과 엇박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100% 무소속 위상 덕분이었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판과 신뢰를 얻게 된 것도 이런 사안에서 보여준 실질적인 독립성 덕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가 인권위의 무소속성을 문제 삼는 것은 느닷없고 위험하다. 2001년 2월23일 한나라당이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무소속 인권위법안을 제출한 사실이 말해주듯이 한나라당은 무소속 위상을 공식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연히 법안 심의 과정이나 지난 6년의 국회 보고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소속 위상 자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

이렇게 볼 때 무소속 인권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은 무지의 소산이기 쉽다. 그렇지 않고 인권위를 이른바 진보정권의 전진기지이자 보수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기는 반인권 정서에 바탕한 개편안이라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칫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주장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되면 인수위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든 셈이다.

당연히 인권시민사회는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발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국제인권사회 역시 가만있지 않을 태세다. 이미 18일자로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이경숙 인수위원장 앞으로 강력한 항의와 경고 서한을 보냈다. 그럼에도 인수위가 강행조짐을 보이면 인권고등판무관은 즉시 한국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한국인권위를 특별등급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독립성을 상실한 무자격 인권위로 판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인권위와 한국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올린 높은 평판과 위상을 모두 잃게 된다. 더 끔찍한 것은 국제인권사회가 이런 시도 자체를 정권교체 때 인권위의 독립성을 뒤흔든 나쁜 사례로 기억하며 두고두고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명박 당선인을 국제사회에서 이런 민망한 사례의 주인공으로 영구히 기억되게 할 생각이 없다면 인수위는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 방침을 자체 없이 거두어야 한다.

- 죄은주 기자 flowerpig@hani.co.kr
- 사진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진료비 바가지 썩우기'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까?

보건복지부가 2006년 4~9월 동안 병원의 진료비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모병원은 28억3천만원의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불법 과다 징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7월26일 드러났다. 성모병원은 140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한겨례21>은 '제2의 기술, 임의비급여로 후려치기'(제668호)에서 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 청구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성모병원의 불법 행위는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의 노력 덕분에 드러날 수 있었다. 환우회 소속 백혈병 환자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심사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병원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 청구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 그때부터 환우회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안기종 환우회 회장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환우회는 병원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우회는 원래 골수암 치료제인 '글리벡'이라는 약을 싸게 구하기 위해 200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2001년 7월에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다. 당시 글리벡은 한 달 약값만 300만~600만원이 들 정도로 비쌌다. 국가인권위에서 농성을 하는 등 환우회의 노력으로 글리벡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현재 약값에 대한 환자 부담은 거의 없다. 그 밖에도 환우회는 백혈병 치료에 필요한 혈소판을 환자들이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혈소판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등 환자들의 권리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환우회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병마와 싸우라, 병원과 싸우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우회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의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돼요."

지금까지 환우회가 병원과 싸우는 '파이터'의 역할을 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일"에 더욱 열정을 쏟겠단다. 백혈병 치료에 필요한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의학교실'이나 환자와 의사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요즘 의사도 환자의 불만이나 생각을 알아야 한

다고 봅니다.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2의 기술, ‘임의비급여’로 후려치기

탄금증 성희롱 피해 교사, 손배소송

“교장과 ‘늑장대처’ 도 교육감 상대” 3천여만원 청구

오윤주 기자

충주 탄금중학교 여교사 성희롱 다툼이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30여곳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탄금증 사태 해결을 위한 충북 공대위’는 7일 “성희롱 피해자 ㄱ교사가加해자인 이아무개 전 교장과 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ㄱ교사는 이날 이 전 교장과 이기용 도 교육감에게 치료비 102만여원, 위자료 3천만원 등 각각 3100여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냈다.

공대위는 “성희롱 경위, 피해자인 ㄱ교사의 고통 등을 감안해 금전적으로나마 고통을 보상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며 “이 전 교장은 억울하다며 소청까지 냈지만 기각됐고, 교육감은 격리조치를 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해 6월 이 교장이 ㄱ교사의 어깨·손 등을 만지는 등 성희롱 의혹을 주장해 도 교육청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가 “교장이 여교사의 신체를 접촉했고, 여교사가 이메일로 재발 방지를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쾌감을 갖는 등 네 가지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성희롱 결정을 내렸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결정 등에 따라 이 교장을 정직 1개월 징계한 뒤 인사 조처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지난해 7월17일 국가인권위에 ‘고충심사 늑장처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을 내 인권위가 지난달 14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왜냐면] 차라리 법무부를 외국인 차별본부라고 하라 / 최현모
왜냐면

마구잡이 단속행태 지적하자
되레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잡아들인다는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의 법제화
상호존중과 인권보호 노력은 말뿐

지난 7월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개청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김성호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추규호 본부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국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모두가 같이 번영하는 자유와 공동번영의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면서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약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내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면서 자유로운 조화 속에 공동의 번영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고 단속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의 준수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지난 수년간 반복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체포·연행과 마구잡이식의 단속행태’만이 계속될 뿐이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되었다. 현행법상 단속의 근거가 되고 있는 긴급보호서의 발급은 고사하고 신분증 제시조차 하지 않는 단속반은 한밤중, 새벽, 거리, 공장, 숙소, 교회 등 인권단체, 등록, 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이면 일단 가리지 않고 잡아넣고 보기전에 급급했다. 단속반의 무조건적인 체포에 저항하다 폭행을 당하고 기습적인 가택 난입에 놀라 피하다 중상을 입은 이주노동자의 수가 부지기수다. 한국정부의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가 말한 ‘상호존중과 자유로운 조화,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은 온데간데없다.

정작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최선의 노력’은 다른 곳에 있었다.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 침해된 인권의 구제를 구하고, 전국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를 비롯한 노동·인권·사회운동단체가 단속행태의 반인권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고치겠다며 입법예고를 했다. 그 내용을 보니 법조항을 신설하여 언제든 어디서든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잡아들이이고, 어디든 들어가서 조사하고 자료를 수색하며, 일단 잡히면 아무런 외부의 사법적 통제도 없이 지쳐서 나갈 때까지 구금시켜 두겠다고 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다고 출입국 단속반의 조사와 출입,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최선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 개정 입법예고를 한 후 20일이 지난 11월27일 “불법체류하며 한-미에프티에이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등 국내의 정치적 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까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을 한꺼번에 연행하여 구금시킨 뒤, 12월13일 새벽 기습작전을 펴듯 3인 모두를 비밀리에 추방해 버렸다. 이들의 단속연행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노조활동 탄압과 표적단속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제출국의 위협이 임박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소송제기의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이것 역시 무시되었다.

2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한 것”과 “헌법에서도 개인에 대한 인신의 자유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작용에 합목적성이라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확대해석하여 그 무단 침입을 정당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밝히고 그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 오늘,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바닥에 내팽겨쳐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쳇말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는 법무부에 의해 ‘씹혀버리고’ 말았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표적단속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아무런 예고 없이 강제출국시킨 것은 조사 방해”라며 법무부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 역시 ‘씹히고’ 말 공산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2조, 제16조는 신체의 자유제한과 주거의 자유제한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와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의 경우에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 동행의 장소를 밝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당사자가 거부할 때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시도는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의 법제화이며,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면 위배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노조 지도부 3인에 대한 기습적인 추방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인정하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처사이다.

그런데 지난 십여 년간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관한 한 무감각을 당연시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인권의 국제적인 보장을 선언한 유엔의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21세기 선진적인 인권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그러한 ‘위헌’과 ‘불법’을 용인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안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단속과정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위법의 소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합법’이라던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그랬고, 국내 대다수의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뒤로 한 채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주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출신국적과 언어’를 포함한 7개의 핵심적인 차별금지사유를 배제한 정부의 태도가 또 그랬다. 전국 대다수의 노동·인권·사회단체

가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다. 결국은 ‘씹히고’ 말았다. 법무부의 힘이 좋은가 보다.

지난 12월18일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 출입국 단속반은 ‘불법체류자를 잡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나?’며 항의하는 인권단체 활동가에게 공무집행방해를 경고했다. 이러한 기조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통과시켜 정부안으로 확정할 판이다. 답답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법무부(法無部) 외국인 차별본부’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최현모/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보도자료>

날짜 : 2008년 1월 28일(월)
수신 : 국회의원 및 각 언론사 기자
발신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인권활동가들
제목 :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문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래군(02-365-5363 / 016-729-5363)

1. 민주사회와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5일째 노상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입니다.
3.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권옹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월 21일 이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을 발의했습니다.
4.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된다면 감시대상자인 행정부에 대해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입니다. 게다가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입니다.
5. 한편, 인수위의 방침과 한나라당의 개악안 제출은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 당시인 2001년,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에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고,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바 있습니다.
6. 오늘(1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이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오후 1시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원총회에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대한 의견서(※별첨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7.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 의견서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촉구한다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위상이 지나치게 격상되어 있는 부처’로 분류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지위가 ‘헌법의 권리분립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을 가져온다고 얘기할 뿐, 어디서도 독립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수위의 이러한 인식이 결국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므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합니다. 인권이란 권력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인권활동가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① 국가인권위 독립성은 설립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인 합의사항입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기존의 행정·입법·사법부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독립적 지위가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는 인권침해 사전예방기구이자 국가권력 감시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운동에서 독립성은 핵심적인 이슈였고, 장장 3년에 걸린 국가인권위 설립운동 끝에, 어느 헌법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위원회의 위상을 규정한 현행 국가인권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어떤 정당이나 정권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에 관한 국가책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입니다.

한국정부 수립과정에서나 그 이후 광폭한 국가폭력을 경험해 온 국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존중과 신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국가인권위 설립운동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국가인권위가 탄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인수위의 인식은 역사를 거스르는 작태입니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의 위치를 오로지 효율성과 기계적인 형식논리를 끌어다 대통령 소속 기구로 격하시키는 것은 국민의 합의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②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은 ‘국제인권기준’입니다.

국가인권기구가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속합니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UN GA Resolution 48/134)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적인 지위는 정부의 특정부문, 또는 공공 및 민간 기구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파

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법적 자치 및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재정적 자치를 통한 독립성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구성을 통한 독립성을 들고 있습니다.

③ 인권옹호에 대한 국가책무는 효율과 경쟁의 가치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향해야 합니다.

인수위의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지위에 관해 '헌법의 권리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매우 기계적인 헌법 해석입니다. 인수위는 '삼권분립'을 언급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수위가 효율과 경쟁의 논리를 앞세워 인권옹호의 국가책무를 저버린다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이 진정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정책에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2. 인수위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의 문제점

①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후퇴 됩니다.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이 된다면 인사, 예산, 법령, 기타 내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행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권침해의 감시자인 국가인권위가 감시대상자인 행정부에 종속된다면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상식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가인권위에 속한 어느 누구가 행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현재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는 역할도 위축될 것입니다. 만약 국가인권위가 대통령 소속으로 갈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1년 설립당시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② 국제인권규범을 훼손하며 국내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문관 루이스 아버 씨는 1월 18일 인수위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는 것에 관해 재고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루이스 아버 씨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적 차원에서 매우 활동적인 위원회이며,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의 중요한 회원기구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부의장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월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독립성의 결여는 다른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국내 인권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객관성과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며 “보복의 두려움 또는 정의구현에 대한 희망의 좌절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 외의 개인들과 단체들의 진정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앰네스티 모두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인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③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 당시 한나라당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 당시인 2001년 2월 23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재정적인 독립과 구성원의 신분은 보장된다”(제4조)며 국가인권위에 입법, 사법, 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현행과 같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지위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한나라당은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관찰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고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임명요청을 받은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한나라당이 최근 국가인권위를 대통령의 수하에 두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을 제출한 것은 국가인권위 설립 논의 당시 자신의 입장과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국가인권위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려다가,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국가인권위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3. 결론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인수위가 헌법상의 권한배분 등을 명분삼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는 의도를 경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인수위의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이 논평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전담기구로 만들려는 속내를 내비친 점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결국은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국가인권기구는 민중들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뿐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침해 현실에 눈감는 국가인권기구, 인권박탈의 현실을 인권의 언어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부여하

는 국가인권기구, 그리하여 인권옹호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려는 차기 정부의 인권정책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권을 반인권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저항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인수위가 이런 부담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짐 지우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항의서한에 대해 보도자료와 방송위와 국가인권위 논란에 대한 박형준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었네요. 참고하세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서한 관련

-2008.01.19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한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 다만 우리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제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아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의 독립성 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보장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는 방송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대통령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이 여야간에 상당한 합의가 되어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 박재완

박형준 위원 브리핑

-2008.01.20

방송통신위 설치와 인권위 소속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의 대

통령 직속기구화에 하는 데 대해서 혹시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그럴 우려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는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에 제도가 못 따라감으로써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제도의 정비 사안이고 이것이 참여정부의 공약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지부진한 논의 끝에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통합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 측에서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정부와 신당 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의 성격이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 왔고 이것이 국회 방송특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가 정통부의 상당부분 기능을 융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행정부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물론 지금 방송통신위 직원들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정통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융합에 따른 신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정통부의 상당 기능이 방송통신위로 간다고 할 때 이 기관이 행정부도 사법부도 입법부도 아닌 3부의 바깥의 법적지위의 모호한 기관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가 갖는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 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방송통신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FCC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이것이 독임제도 아니고 합의제에 의해서 구성될 것이고 또 구성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방송특위에서도 구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의견을 인수위에서도 상당 부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당 일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미

치기 위함이 아니냐 하는 의문제기는 그동안 자신들이 참여정부와 함께 해 왔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인권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 문제에 충실히 기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독립성은 업무수행상의 독립성으로 이해를 해야지 소속상의 독립성으로 해석하여 그 어디에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와 국가인권위의 조직적 위상에 대한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사안이 현재의 헌법체계에서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법적지위의 모호한 조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기능으로 대통령 직속하에 있지만 그 소속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의 법적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또 부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느냐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두 기관 다 성격상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합의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